##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(김위상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호 3863

발의연월일: 2024. 9. 10.

발 의 자:김위상・박충권・임이자

김승수 • 박성민 • 강선영

김선교 • 서범수 • 이종배

김성원 의원(10인)

##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코로나-19 사태 이후 4차 산업혁명에 따른 산업구조의 변화로 재택 근무를 실시하고 있는 사업장이 확대되고 있음.

그런데 재택근무를 하는 근로자가 근로시간 이후에도 전화, 문자, 이메일, 소셜네트워크서비스(Social Network Service) 등 통신수단을 통해 업무지시를 받는 경우가 많아 업무 스트레스가 가중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.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근로시간 외 직장 상사 등으로부터 온 업무 관련 전화, 메일 등을 받지 않는 이른바 '연결되지 않을 권리'를 법으로 보장할 필요가 있다는 요구가 높아지고 있음.

이에 50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의 경우 노사 간 합의를 통해 근로자가 근로시간 이후에 전화, 문자 등 통신수단을 통한 업무 지시에 따라 근로하지 않게 할 수 있도록 하고, 사용자가 업무지시에 따르지 않은 근로자에 대하여 불리한 처우를 하지 않도록 법률에 명 시함으로써 근로자의 근로조건을 보장하려는 것임(안 제53조의2 신설등).

법률 제 호

##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

근로기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5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53조의2(근로시간 외 근로 제한) ① 상시 5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근로시간 외의 시간에 전화(휴대전화를 포함한다), 문자메시지, 이메일, 소셜네트워크서비스(Social Network Service) 등 각종 통신수단을 이용한 업무 지시를 받은 근로자가 그 지시에 따라 근로하지 아니하도록 할 수 있다.

② 사용자는 제1항에 따라 서면 합의를 한 경우 근로시간 외의 시간에 통신수단을 이용한 업무 지시를 받은 근로자가 그 지시에 따라 근로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.

제110조제1호 중 "제54조"를 "제53조의2제2항, 제54조"로 한다.

## 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u> &lt;신 설&gt;</u>	제53조의2(근로시간 외 근로 제
	한) ① 상시 50명 이상의 근로
	<u>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</u>
	장의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
	서면 합의에 따라 근로시간 외
	의 시간에 전화(휴대전화를 포
	함한다), 문자메시지, 이메일,
	소셜네트워크서비스(Social Net
	work Service) 등 각종 통신수
	단을 이용한 업무 지시를 받은
	근로자가 그 지시에 따라 근로
	하지 아니하도록 할 수 있다.
	② 사용자는 제1항에 따라 서
	면 합의를 한 경우 근로시간
	외의 시간에 통신수단을 이용
	한 업무 지시를 받은 근로자가
	그 지시에 따라 근로하지 아니
	하였다는 이유로 해고나 그 밖
	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
	<u>니 된다.</u>
제110조(벌칙) 다음 각 호의 어느	제110조(벌칙)
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	
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	

- 의 벌금에 처한다.
- 1. 제10조, 제22조제1항, 제26조, 제50조, 제51조의2제2항, 제52조제1항 · 제53조제1항 · 제2항, 같은 조 제4항 본문 · 제7항, 제54조, 제55조, 제59조제2항, 제60조제1항 · 제2항 · 제4항 및 제5항, 제64조제1항, 제69조, 제70조제1항 · 제2항, 제71조, 제74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, 제75조, 제78조부터 제80조까지, 제82조, 제83조및 제104조제2항을 위반한 자

2.	(생	략)

. 1
<u>제53조의2제2항, 제54조</u>
2. (현행과 같음)